



## 법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은 지자체 재량권”

이슈판권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이라도 주택조합에 대한 자치단체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은 정당한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충북 청주의 A주택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주택조합은 359세대 아파트 분양 완료된 이후

2018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로부터 모두 4억5000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주택조합은 2012년부터 2018년 이후까지 아파트 지역 취학연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등 학교 신설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황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

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취학 인구 현황은 각 부담금 부과처분 기준으로부터 각 3년의 기간을 살펴보더라도 지속적으로 감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학교 신설 여부나 증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이상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재량권을 갖는다고 볼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조치가 비례·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 이하 추진

일부 지역의 경우 제한속도 시속 40km 이상

## “더이상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일부 구역의 경우 제한속도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모든 곳에 형평성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관계부처 협동으로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식이법’ 통과 이후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의 제한

속도가 각기 달라 논란이 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1만6789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상인 곳은 588개소다. 비율로 따지면 3.5%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올해 말까지 일제히 30km 이하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다만 국도 및 간선도로와 접해 30km 속도제한이 어려운 곳은 등하고 시간대 가변형 속도제한 등 시간제 속도하향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경계인 지역의 경우도 급감속 방지 를 위해 원총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정부는 ‘제한속도 30km’ 와 연계해 대국민 인식 제고에도 나선다. 매월 30일을 ‘어린이보호구역의 날’로 지정하고 전 국민 제한속도 지키기 등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는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매월 30일, 30초만, 30km 이내로’ 등의 슬로건을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와 교육부, 경찰청은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우선적으로 올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설치한다. 이와 관련 예산 205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분담)이 투자될 예정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도서관은 만석 7일 세종시 어진동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 ‘세월호 구조지연 의혹’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6명 구속기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심리



세월호참사 당시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지원’ 의혹을 받는 김

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8일 구속기로에 선다.

7일 법원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6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검장)은 6일 김 전 해

경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11일 세월호 특수단이 공식 출범한 뒤 56일 만에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3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부터 단원고 2학년 고(故) 임경빈군의 헬기 이송 지원 의혹,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뉴스1

## “초등학교 앞 병원장례식장 설치라니”

### 광양 학부모들 반발

광양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병원에 들어설 예정인 장례식장에 대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7일 광양시와 해당 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해 10월 병원 지하식당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광양시에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시는 민원을 우려해 학교 인근 마을회관을 들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고, 인접 학교와 주변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 의견을 요청했다.

시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장례식장의 경우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에 있지만 설치하지 못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점 등을 들어 지난 3일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장례식장 설치에 반발하며 반대서명에 들어갔다.

광양시 관계자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용도변경 등의 허가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전남도와 협의사항인 의료시설 변경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 모두, 안녕하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우리 민족이 있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건강IN  
건강한 경북, 건강한 생활



보건복지부  
119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